

工所權制度 發展위해 기탄없는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不拘하고 參席하여 주신 關係機關, 企業體 및 關係團體 任職員等 工業所有權 關係分野 여러분께 먼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本 公聽會에 公述人으로 參加하여 意見을 發表하실 公述人 여러분께도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잘아시는 바와같이 最近 새로운 技術의 開發과 그에대한 保護關係가 國際通商뿐아니라 國內産業의 發展이라는 側面에서 매우 重要한 問題로 擡頭되고 있고, 그에 못지 않게 開發 生産된 製品의 效果的인 保護와 關聯된 商標에 관한 重要性 또한 그 어느때 보다는 強調되고 있으며, 이는 오늘의 現實에서 살펴 볼때 國際通商의 重要한 問題로 까지 浮上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러한 國內外的인 與件과 工業所有權 關係 法令의 根幹이 되는 特許法 改正과 並行해서

商標·意匠制度의 國際化 趨勢에 副應하고, 現代化된 法令으로의 整備를 위하여 特許法과 商標法·意匠法 또한 그 整備가 必要하다고 봅니다.

이에따라 지난 1年余間 廳內外的 많은 專門 家가 參與하여 商標法·意匠法 改正作業班을 構成하고, 現行 商標法·意匠法의 여러가지 制度的 矛盾點, 改善할 事項, 새로이 導入되어야 할 事項等を 檢討하여 왔습니다.

現行 商標法은 1949년에 制定된 以後 7次에 걸친 改正이 있어 왔고, 意匠法은 1961년에 特許法에서 分離 制定된 以後 5次에 걸쳐 改正이 있었으나, 이는 必要事項에 대하여 部分的인 改正에만 그치게 되어 오늘의 現實에서 볼때는 여러가지 不合理하고 矛盾된 條文이나 內容이 아직도 곳곳에 散在되어 있음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商標法·意匠法 改正의 主要方向을 말씀드리면, 첫째, 特許法 體制整備에 따라 商標法·意匠法도 一般國民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그 體制를 整備할 豫定입니다.

둘째, 商標·意匠制度의 國際化 趨勢에 副應하기 위하여 商標의 경우, 파리協約 第6條의3에 規定된 파리協約 同盟國內의 公共機關이 使用하는 監督用 및 證明用的 記號나 印章과 類似한 商標의 出願은 商標登錄을 不許하도록 商標不登錄 事由를 擴大하고, 意匠의 경우에는 現在 出願前 國內에서 公知·公用된 意匠에 대해서만 意匠의 不登錄要件으로 하고 있던 것을 國外에서 公知·公用된 意匠에 대해서 까지 意匠登錄의 不登錄 要件으로 함으로써,

意見 開陳바람

公知·公用의 地域的 判斷基準을 國內主義에서 國際主義로 轉換 하였습니다.

셋째, 商標權者 및 意匠權者의 權益保護를 強化하기 위하여 商標權을 移轉하는 경우에 現行 制度下에서는 指定商品을 全部 移轉하는 경우에만 許容되고 있으나, 이를 指定 商品別로 分離하여 移轉토록 하며, 指定商品의 一部 無效 또는 一部取消 制度를 新設함으로써 無效나 取消事由를 內包하고 있는 一部 指定商品으로 인한 商標權 自體의 消滅을 防止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商標 不使用 商標權者의 制度를 強化하기 위하여 取消審判制度에 있어서 現在는 商標登錄取消審判이 提起된 後 商標權을 拋棄하거나 指定商品을 一部 抹消하는 경우 取消審判이 却下되어 取消審判制度가 實效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을 是正하여 審判請求日 以後 拋棄·抹消하는 경우에는 審決 乃至 判決이 確定된 날로부터 3年內에는 登錄을 받을 수 없도록 商標登錄取消 要件을 強化하였습니다.

다섯째, 商標 使用權制度를 變更하여 專用使用權과 通商使用權으로 區分하였으며,

여섯째, 正當權利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現在 出願時 商標不登錄 要件中 商標法 第9條 第1項 第7號에 該當하는 商標가 出願後 讓受·讓渡節次에 同一人임이 立證 되는 경우에는 登錄을 許與토록 不登錄 要件을 緩和하였습니다.

일곱째, 出願人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商標·意匠 公히 特許와 같이 出願人이 提出한 補正書를 審査官이 採擇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 商標·意匠制度의 國際化 추세에 부응하고 現代化된 法令으로서의 整備를 위하여 特許法과 같이 商標·意匠制度 또한 그 整備가 必要하다고 봅니다. ”

却下 處分토록 하고 同却下에 대하여도 不服할 수 있는 補正却下 不服抗告審判制度를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여덟째, 其他 不合理한 制度를 改善하여 現代化된 法令으로 손색이 없는 改正案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商標法·意匠法 改正에 대한 本公聽會는 特許法과 같이 그 重要性을 十分 勸案하여 開催하는 것이므로 參席하신 여러분들의 깊은 熱과 誠을 다한 公述과 質疑로서 지난 特許法 公聽會 때와 같이 成功的이며 內實있고 充實한 公聽會가 되리라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모쪼록 本公聽會에 參與하신 公述人을 爲始한 工業所有權에 關心 있는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工業所有權 制度의 發展을 위하여 本商標法·意匠法 改正에 대하여 기탄없는 意見을 開陳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開陳된 意見은 改正案에 反映되도록 積極 努力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公聽會를 위하여 物心兩面의 協調를 아끼지 않은 大韓辨理士會 會員·韓國發明特許協會 會員等 關係者 여러분께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工業所有權制度 發展을 위하여 많은 關心을 가지고 公聽會에 參席한 여러분께 다시 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健康과 幸福이 같이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9. 6. 23.

特許廳長 朴弘植